

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

일부개정고시안

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나목 중 “추첨”을 “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 하되,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입주자 선정방법)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	제6조(입주자 선정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노부모부양 주택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	2.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: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(다만,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)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<u>추첨</u> 의 방법으로 공급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,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<u>추첨</u></u> ---